

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0의6] <신설 2026. 4. 30.>

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
(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)

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	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.....¹⁾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²⁾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Korea-UAE CEPA and that the origin criteria met is³⁾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f the Exporter;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
작성방법	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,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합니다.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, 정자로 적습니다. 1)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 2) 원산지를 적습니다. 3) 원산지 기준을 적습니다.